

# 연구원 인건비 내규

개정 2020. 11. 1.

**제1조(목적)** 이 내규는 교외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 문화의 정착과 인건비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연구원”이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받는 “박사 후 연구원”, “전임연구원”, “연구보조원”을 말한다.
2. “박사 후 연구원”이라 함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임 유급 연구인력을 말한다.
3. “전임연구원”이라 함은 대학 부설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전임 유급 연구인력을 말한다.
4. “연구보조원”이라 함은 2호와 3호 이외의 유급 연구·행정인력을 말한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교외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원의 인건비 지급에 관해서는 본 내규를 따른다. 단, 지원기관에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는 해당 지침을 준수한다.

**제4조(연구원의 연간활용계획 수립)**

- ① 연구책임자(지도교수)는 연구원 운영규모,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연구원 연간활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,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원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연구원과 협의를 거쳐

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「연구원근로계약체결요청서」를 작성하고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참여과제번호, 인건비 지급기간, 인건비 편성금액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
2. 인건비 편성금액 작성 시 4대보험 법인부담금과 퇴직금은 지원기관 지침에 의거 연구비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

### 제5조(연구원의 근로계약 체결)

- ① 연구원으로 채용된 자는 산학협력단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② 연구원의 근로계약 기간은 참여하는 연구개발사업 기간에 따라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 제6조(연구원의 인건비 산정)

- ① 연구원의 인건비는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산정한다.

연구원구분 (직급)	동등경력 인정사항	월 기준액 (단위:천원)
책임급	-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경력 6년 이상 -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경력 12년 이상 -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경력 17년 이상	7,100
선임급	-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경력 3년 이상 -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경력 8년 이상 -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경력 12년 이상	5,900
박사급	- 박사학위 소지자, Post-Doc -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경력 4년 이상 -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경력 7년 이상	4,800
석사급	- 석사학위 소지자 - 학사학위 취득 후 경력 2년 이상	3,600
학사급	- 학사학위 이하 소지자	3,000

1. 월 기준액은 참여율 100%인 경우의 금액이며, 실제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를 편성한다.
2. 인건비에는 월급, 조정수당, 4대보험 법인부담금, 퇴직금을 포함한다. 단, 퇴직금은 총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계상하지 않을 수 있다.
3. 인건비 편성금액은 매 해 정부고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주당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산출하며, 연구원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.
  -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사업 등을 통해 해외우수연구자를 초빙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인건비를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#### 제7조(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)

- ① 대학,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의 원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 받는 참여연구원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다.
- ②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는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금액에 근무한 월을 나누어 산정한다(천원 미만 절사).

부칙(2020. 2. 21)

본 제정 내규는 2020.2.29.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0. 11. 1)

본 개정 내규는 2020.11.1.부터 시행한다.